

#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제729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3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## 1.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

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

## 2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은 조성목표액 500백만원 조성이후 사용계획 수립
- 기금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사용 억제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제35조(지방의회 의결사항)
- 지방자치법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- 지방재정법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
-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

## 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#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## I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  - 기금의 설치 · 운용
- 지방재정법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
 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
  -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 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
- 지방자치법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 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
  -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2조(기금의 설치)
  -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,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설치한다.

## II. 기본현황

- 설치년도 : 1996년도
- 설치목적 :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
- 기금의 용도
  -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
  -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
  -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지도
  -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
  -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
  -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
  -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 운영 지원
  - 노인의 건강 및 취미생활
  -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관한 사항

### Ⅲ 기금조성 현황

예치은행	예금종류	연도별	계좌번호	적립액 (단위:원)	만기일
고성군금고 (농협)	저축성 예금	1차적립금 (‘92~’96)	497-03-004193	112,440,070	2001.11.17
		‘97년 출연금	497-03-004375	80,072,870	2002.1.26
		‘98년 출연금	497-03-003532	67,265,710	2001.12.6
		‘99년 출연금	497-03-002546	60,000,000	2001.12.20
		2000년 출연금	497-03-004292	60,000,000	2001.12.8
		2001년 출연금	12월중 예치예정	60,000,000	
계				439,778,650(추정액)	

※) 향후 노인복지기금 관리방안

- 연도별로 출연금 분산예치금을 예치만기일이 서로 달라 2002년 1월 26일 최종만기일에 맞추어 1통장으로 통합관리
- 예치금융기관 : 고성군금고(농협중앙회고성군지부)

### Ⅳ 2002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- 2002년 1월말 기금조성 예상액 ----- 470,151천원
  - 기 조성액 : 379,778천원
  - 2001년 출연금 : 60,000천원
  - 이자수입(예상) : 30,373천원
- 기금증식을 위하여 당분간 사용억제하고 조성목표액 500백만원 조성이후 사용계획 수립